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 '18. 1. 1.)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 '18. 1. 1.)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소유·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 확대를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399 호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 '18.1.1.)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지정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지정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9. 2. ~ 9. 22.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위생, 유동인구, 접근성, 남녀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위생, 유동인구, 접근성, 남녀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